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35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정을호·이연희·추미애

김 윤 · 정태호 · 전현희

강경숙 · 김준혁 · 백승아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 우수인 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 해당 지역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보건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실제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지역인재선발제도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시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제7조(실태조사) ①		
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